■ 재해구호법 시행령 [별표 1]

급식 ·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(제2조제2호 관련)

1. 급식

가. 주택이 침수되었거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단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 : 재해를 입은 날부터 최초 7일간

나. 주택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

1) 주택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된 경우: 2개월간

2) 주택이 반파된 경우: 1개월간

2. 생활필수품

식품 · 의류 · 침구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피해의 정도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호기관이 지급한다.